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0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주철현
권향엽 · 김승원 · 이수진
강준현 · 문진석 · 이상식
이정문 · 김원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용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

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
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
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청년농업인 임차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의 범위, 임차기간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인 임차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9조의5(청년농업인 임차농지</u> <u>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u>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u> <u>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 <u>에 따른 청년농업인(이하 이</u> <u>조에서 “청년농업인”이라 한다)</u> <u>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농</u> <u>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u> <u>상 계속하여 임차한 농지의 소</u> <u>유자가 해당 농지를 해당 청년</u> <u>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u> <u>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u> <u>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u> <u>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u> <u>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농지의 범위,</u> <u>임차기간의 계산 및 그 밖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②②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 <후단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
과 같음)

② _____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u>2026년 1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u>2030년 1월 31일</u>----- ----- 4. (현행과 같음)
---	--